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배점
1. 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2. 기술능력	25	기술 수준	15	기술 인증	15
		생산역량수준	10	기술인력 보유	5
				생산기술 축적	5
3. 경영상태	20	경영상태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4. 품질 관리	25	품질검사 결과	25	조달청·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5
5. 사후 관리	10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10
6. 신인도	0~-55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평균 납기지체	-10
				부정당업자 제재	-1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5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15
<b>계</b>	<b>100</b>	<b>계</b>	<b>100</b>	<b>계</b>	<b>100</b>

\*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조건에 따른 감점처리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실적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기업구분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중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10건 이상
			17.5	6건 이상 ~ 10건 미만
			15	3건 이상 ~ 6건 미만
			0	3건 미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6건 이상
			17.5	3건 이상 ~ 6건 미만
			15	1건이상 ~ 3건미만
			0	1건미만

※ [주]

- ①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하되,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사전심사대상자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 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하며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납품실적(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1년 이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 적용기간 등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한다.
-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확인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전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 ④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적증명원을 공증받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기술능력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기술수준	대표규격의 기술인증 보유 ① 고도기술: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제품, 성능인증) ②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 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15	고도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13	일반·녹색기술 인증 1개 보유
		0	인증 미보유
생산역량수준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인력의 보유수)	5.0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 보유
		4.5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이상 ~ 3인미만 보유
		4.0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보유
		3.5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 3인 미만 보유
		3.0	기능사 3인이상 보유
		2.5	기능사 1인인상 3인미만 보유
		2.0	미보유
	생산기술 축적 (생산공장의 등록 년수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물품 납품 년수)	5.0	3년 이상
		3.5	2년 이상 ~ 3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0.5	1년 미만	

※ [주]

- ① 기술수준의 심사는 심사대상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기술 인증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 ② 기술수준 평가대상 인증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기술인력 보유의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보유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자격의 범위를 구매입찰공고서 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3. 경영상태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1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품질관리 (배점한도 25점)

세부 심사항목	심사지표	심사기준	평점
품질검사 결과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 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25점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20점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15점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10점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5점

※ [주]

- ①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 5. 사후관리 (배점한도 10점)

세부 심사항목	심사지표	심사기준	평점
사후관리 신뢰수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 [주]

- ① 사후관리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44조에 따라 평가받은 계약이행실적평가(세부품명기준)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으로 처리한다.

### 6. 신인도 (배점한도 0~-55점)

(단위 : 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계약 이행 신뢰 수준	평균 납기지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납기지체 일수의 합계/전체 납기지체 건수)	0	없음
		-1	1일 이상 ~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20일 미만
		-5	20일 이상 ~ 30일 미만
		-10	30일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0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 20점 미만
-15		20점 이상	

※ [주]

- ① 계약이행 신뢰수준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